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자치연수원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변경(안 제5조 제3호)
 -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➡ 연수원장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
 -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➡ 전액 또는 일부 반환
 - 천재지변이나 공익 목적으로 취소 : 전액
 - 사용자 사정으로 취소 : 취소시기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

4. 검토의견

- 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
시설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공공시설물을 운영하고
자 자치연수원 시설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
시설사용료 납부 및 반환규정을 사안별로 규정하는 것으로

- 공공시설물이 일반인에게 많이 개방되는 현실에서 시설사용에
대한 근거규정과 사용료에 대한 반환사유를 명확하게 개정함으
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일반인에게 신뢰받는 공공
시설물 운영을 도모하는 취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안 제8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제2항 제2의 ‘사용자의 사정
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’에서 시설사용 신청자가 사용개시
5일 전(前)에 취소할 경우에 연수원에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
고 사용개시 전날 취소에는 “사용료의 10%를 공제 후 반환”한
다고 하였는데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에 대한 규정
이 없어 장래 시설사용자와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
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
부 끝.